



광 주 고 등 법 원

전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전주)2025누98 과세처분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피고, 항소인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한○○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223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9.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취득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20~21행의 "이 사건 사업"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표의 '일자'란 중 "2022. 9."를 "2022. 5.~2022. 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표 아래 4~5행의 "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표 아래 5행의 "28.8억 원"을 "28억 8,000만 원"으로, 같은 표 아래 6행의 "4.8억 원"을 "4억 8,0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18행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를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의 입법 취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1쪽 16~17행의 "근거법률이 다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추가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021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각 대법원 판결 역시 이 사건과는 그 근거법률이 모두 다른데다 그 사실관계 역시 실제 토지 취득 당시부터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던 사안이므로 위 대법원 2000두10038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

판사 조○○

판사 김○○